

안전보건관리규정



| 회 람 | | | |
|---------|-----|-----|------|
| 공 종 | 성 명 | 직 책 | 서 명 |
| W건설 | 이상기 | P.M | 1004 |
| " | 김종기 | 소장 | AB |
| 이용 | 이정근 | 소장 | EE |
| W W | 전기인 | 이서 | CC |
| 세운보이(주) | 장현진 | 도장 | 자 |
| | | | |
| | | | |
| | | | |

여주 역세권 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회 | 담당 | 공사팀장 | 건축 | 건축 | 건축 | 기계설비 | 전기설비 | 소장 |
|---|-----|------|------|------|------|------|------|----|
| | 조종현 | 이정근 | 김종기 | 정지원 | | 김경수 | 여종만 | |
| 람 | 토목 | 품질관리 | 품질관리 | 품질관리 | 안전관리 | 안전관리 | 보건관리 | 공무 |
| | 오정학 | 이정근 | 정지원 | 김종현 | | 강승호 | | |

안전보건관리규정(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주)우남건설 여주역세권 2블럭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산능률의 향상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 현장내의 임직원과 기능직사원 협력업체의 전 직원 및 현장내 방문객 또는 출입하는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의무】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과 법령에 관계된 제반규정 및 규칙, 기준, 수칙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조직”이라 함은 LINE형과 STAFF형의 장점을 잘 절충하여 조정한 유형으로서 안전기술 축적이 용이하고 안전 지시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게 하달되어 현재 가장 이상적인 관리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조직형태
2. “안전사고”라 함은 고의성이 없는 사건으로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환경 조건이 선행되어 생산활동을 저하시키며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3. “재해”라 함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한다.
4. “무재해”라 함은 사업장에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말한다.
5. “중대재해”라 함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사건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당 현장의 최고 책임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와 건의를 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리감독자”라 함은 당 현장의 공종별 책임자로서 당해 공종에 소속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과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를 점검하고 확인, 조치하는 자를 말한다.
8. “안전담당자”라 함은 직, 반장의 위치에서 근로자의 작업을 직접 지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9. “작업지휘자”라 함은 해당업체의 직, 반장급 이상으로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팀원의 안전여부를 확인과 조치를 취하는자를 말한다.

10. “신호수” 라 함은 장비의 유도, 위험지역에의 근로자 통제, 크레인 신호를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5조 【안전보건업무우선】 현장의 모든 업무는 안전제일 정신의 기초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사고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제도 등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6조 【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사업주 및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목적달성과 본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고예방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은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유해위험기계기구과 안전시설 및 작업방법 등 대한 재해예방을 총괄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2.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함으로써 현장의 안전보건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3. 공사담당자(관리감독자)는 근로자 보호구 착용 지도, 안전시설물의 설치·유지 등 실질적인 현장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며, 사고예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4. 근로자는 법과 본사규정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조직

제7조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1. 현장의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2. 현장의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운영을 위하여 원청사와 협력사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은 (주)우남건설의 총괄책임자 이하 공종별 책임자 및 협력업체 작업지휘자, 근로자 대표로 한다.
4. 노·사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협의체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에서 정한 인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주)우남건설 여주역세권 2블럭 현장소장이 된다.
2. 안전관리자는 2명으로 하며 (주)우남건설의 유자격 전담직원이 한다.
3.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직원이 된다.
4. 각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는 협력업체 소장이 된다.

5.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자는 해당 공종책임자로서 협력사 소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6. 협력업체의 안전담당자는 원하청간 협의후 별도로 지정하여 현장내 안전시설물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7. 작업자취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협력사의 소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8. 노.사협의체회의 위원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하 작업책임자(근로자대표)까지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협의체의 구성인원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공종별 공사책임자, 각 협력사의 소장으로 한다.

제3장 직무

제9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현장 조직상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법 및 규정이 정하는 외에 다음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중점사항의 목표 및 방침 설정
2. 현장내 안전보건 업무계획의 승인
3. 노.사협의체회의 (이하 "협의체" 라 한다) 주재
4.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분장 및 책임의 명문화
5.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산재위험 산재시 작업중지 및 제재조치
6.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조치
7. 2일 1회 이상의 작업장 순회점검
8.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협의 및 조정
9. 위험기계, 기구류 및 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사용여부 확인
10. 제반 규정의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11.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 부여와 지원
11.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

제10조 【안전관리자】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조언하며 사고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일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안전보건관리규정, 규칙, 기준,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5. 각종 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과 사후조치 및 보고 등 업무
6. 안전보건 위원회의 운영
7.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용계획 및 집행내역 관리
9.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이행여부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0. 기타 사업장에 필요한 사항의 안전조치

제11조 【관리감독자】 당 현장 조직상의 관리감독자는 관계법 및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안전관리 추진계획의 시행
2. 회사 및 현장의 안전목표와 방침을 근로자에게 주지
3. 사업장내 각 부서별 관리감독자와 관련되는 작업에 사용되는 위험기계, 기구류 및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등 제반관리
4.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5. 협력업체 안전관리의 수행을 위한 지도감독
6. 사업장의 안전점검과 불안전상태(안전시설물의 미설치등) 및 불안전행동의 시정을 위한 조치와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7. 당해 사업장 안전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8. 사업장내 안전계몽 및 안전교육 실시
9. 사업장내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와 그 시행여부의 확인
10. 당해 작업과 관련된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
11. 기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협력업체의 소장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당 현장의 해당 작업장에 대한 일 1회 이상의 순회점검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
3. 원청의 안전지시업무 수행
4.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 등의 실시 및 보고
5. 위험기계, 기구류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보고
6. 재해 발생시 응급조치 및 즉시 보고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협의, 월별 사용내역 작성 및 보고
8. 당해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그 착용에 관한 지도 감독
9.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일
10. 원청사의 안전규정 및 지침의 수행 및 협조
11. 안전규정 위반자 또는 안전지시 불응자에 대한 조치
12.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제13조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는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간 및 월간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작업장내 작업지휘자에 대한 지도 및 안전사항에 관한 지시업무 수행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특별교육

5. 안전규정 위반자 또는 안전지시 불응자에 대한 조치
6. 현장내 산재위험 산재시 즉각적인 안전조치 실시 및 보고
7. 기타 규정한 사항외에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의 수행

제14조 【작업지휘자】 1.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경우 협력업체 책임자(소장)은 종사 근로

자중 작업경험이 많은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안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지게차등 화물 운반차를 사용하는 작업
 - ② 100kg 이상의 화물을 상, 하차하는 작업
 - ③ 장비작업 및 수리, 부족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
 - ④ 가연성,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 ⑤ 산소용접 및 용단작업, 아크용접작업
 - ⑥ 산소결핍 및 고기압 하에서의 작업 등 관리감독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
2. 작업지휘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① 해당 작업장내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 ② 해당 작업장내 진행되는 작업의 안전여부 확인 및 안전조치 실시
 - ③ 해당 작업장내 안전시설의 설치상태 확인 및 보고
 - ④ 해당 작업장내 재해발생 위험시 작업중지 및 즉시 보고 실시
 - ⑤ 기타 작업중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관한 응급조치 및 보고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 【기초안전보건교육】 당 현장에 취업하는 모든 직원 및 전 근로자는 신규취업시 다음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작업 종사전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당 현장에 설치된 위험기계, 기구류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안전장치의 사용 및 안전보호구 착용방법에 관한 사항
4. 현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및 공정별 작업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사례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6.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7.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 . 가상실습 포함

제16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당 현장의 근로자중 작업변경을 하는 자에게 위 제15조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업무 개시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17조 【특별안전보건교육】 당 현장에 종사할 근로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작업의 위험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작업 종사전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받

아야 한다.

제18조 【정기안전교육】 당 현장에 취업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장은 매 분기 3시간 이상(매월 2시간) 정기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현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보호구 착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안전 사고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5. 안전표시의 이해 및 주의에 관한 사항
6.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시 잠재위험 및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7. 사업장 무재해 추진기법 중 시행할 사항
8. 작업장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9.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10.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연락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관리감독자 교육】 당 현장의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매월 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안전작업지도 방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교육방법 및 실시요령에 관한 사항
4. 산재발생 및 이상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장내 위험기계, 기구류의 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6.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
8. 위험부위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9.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10. 기타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교육강사】 당 현장의 안전교육강사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안전교육시 강사는 사내강사를 원칙으로 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로 구성한다.
2. 근로자 작업변경시 교육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의 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교육시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이나 강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기록의 보존】 안전교육 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모든 안전교육의 기록은 피교육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사진 등 근거서류를 보관한다.
- 신규채용자의 안전교육기록은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수증으로 대체하여 관련 근거는 보관한다.
- 교육관련 서류는 3년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본사 건설사업본부에 이관한다.

제5장 안전보건관리

제22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 현장내 안전관리계획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자가 수립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전 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며, 현장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상시 게시하도록 한다.

제23조 【노.사협의체 운영】 산.안.보 제29조2항 및 29조3항 의거

- 당 현장의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은 산.안.보 제29조2항 및 29조3항에 의거 조직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근로자대표)이 3인 이상~9인 이하 포함된 조직(이하 “협의회”라 한다.)으로 하며, 2월1회 이상의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 당 현장의 안전보건기구조직도상의 안전보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회의시 충실히 참석해야 하며 협의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작업의 시작 및 종료시간
 -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 안전보건에 관한운영
 - 순회점검에 관한사항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기타 건의사항

제24조 【안전보건진단】

- 현장의 안전보건진단은 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개선 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받거나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히 지정할 때와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 현장의 안전보건진단은 지정된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진단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한다.

제25조 【안전점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안전점

검을 수행한다.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1일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한다.
2. 안전관리자는 1일 2회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현장소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하며, 현장소장은 안전관리자의 점검결과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는 해당 구역(작업)에 대한 안전조치사항을 작업전과 1일 2회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한다.
4. 안전관리자는 현장 점검시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부서장에게 안전지시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해당부서는 이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보완대책을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한 행동의 근로자에게는 “삼진아웃 경고 통보서”를 발부하고 3회 발부받은 근로자는 현장내 취업을 금지한다.

제26조 【안전보건 당직제도 활용】

1. 현장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일 또는 주간 안전관리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2. 일일 또는 주간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는 사무실및 현장내의 전반적인 이상 유무에 관하여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여 이상발견시 즉시 조치하여 사전 사고예방 및 피해의 극소화를 이룰수 있도록 한다.
3. 일일 또는 주간 안전관리자는 현장내 규정된 당직 지침에 따라 근무해야 하며 당일 근무내용에 관하여 안전일지와 현장점검일지에 작성해야한다.

제27조 【안전보호구】

1. 근로자의 안전보호구는 소속 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력업체에서 보호구 지급이 미흡할 경우에는 원청사에서 해당 보호구를 지급할 수 있고, 그 금액은 협력업체 부담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청사에서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제외)
2. 당 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장내에 근무하는 전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의 착용을 의무로 해야하며, 각 공종별 작업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3. 당 현장의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지정된 목적외에 타용도로 사용을 해서는 안되며 작업시 보호구를 미착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중지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 【건강진단】

1. 사업장내 전 근로자는 1년 이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검진을 받는자는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장내 전 근로자는 년1회 일반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며 특별한 경우 임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3. 용접.분진.소음 등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련 공종은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6개월이 지나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3.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와 일반질병 유소견자는 담당의사의 소견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업을 제한하며, 장기 요양치료를 요하는 등 현장 작업여건에 부적합한 소견결과가 나왔을때 당 사업장에서의 취업을 금지하도록 한다.

제2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당 현장의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및 정산은 원청사가 주관하여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실사를 실시하여 집행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는 안전관리계획에 수립되는 시점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항목별 집행금액은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집행한다.
3. 당 사업장의 협력업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무재해운동 추진】

1. 당 사업장의 무재해를 위하여 무재해추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2. 당 사업장의 무재해를 위하여 사업장내에 무재해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위원 및 실행위원은 전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한다.
3. 무재해 추진결의대회를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며 무재해개시보고는 따로 하지 않는다.
4. 무재해 추진운동의 방법은 현장 및 각 공종의 실정에 따라 각각의 추진방법을 설정하여 추진하며, 특히 분임조의 활동을 적극 양성 장려한다.

제31조 【위험기계, 기구류관리】

1. 당 현장내 위험기계·기구류는 반입시부터 반출시까지 철저히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협력사는 사전에 반입사항을 현장 사무소에 고지해야 한다.
2. 안전장치가 미부착된 기계, 기구류는 사업장에서의 사용을 금하며 규칙 별표15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소지자 또는 교육 이수자가 종사해야 한다.
3. 각 협력사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기계, 기구류의 관리표를 작성 매일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제32조 【위험물관리 및 방화관리】

1. 당 현장에 사용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 및 기타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에서 자체보관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취급자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도록 한다.
2. 당 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업장내 가설 사무실 및 숙소와 화기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실내에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3. 당 현장은의 각 협력업체는 자위 소방기구를 조직, 비상시에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제33조 【작업중지】 안전총괄책임자 이하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 관계법령을 위반시
2. 중대재해 발생시
3. 불안전상태 및 불안전행동을 발견시
4. 음주상태로 작업에 임할시
5. 기타 재해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제34조 【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관리】

1. 당 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가 왕래하는 곳에 안전수칙 및 안전계통 표지판을 설치한다.
2. 당 현장 전 지역의 위험요소를 예지 및 발굴하여 해당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3. 현장내 위험지역에 대하여 즉시 안전조치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한다.
4. 당 현장의 공사 특성상 추락, 낙하, 감전 등의 위험이 높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강조된다.

제35조 【사전사고예방활동】

1. 각 협력사는 사전에 안전작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월간 공종별 작업계획서에는 예상작업 및 사용할 기계, 기구류 및 중점 관리할 위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표는 공종 작업시작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채용자, 작업내용, 작업지휘자, 작업인원, 작업지역, 위험사항, 안전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협력사의 사전 작업계획서와 당사의 예정 공정 계획서를 참고하여 사전대책 및 조치할 사항을 강구하여 협의체 회의시 안건으로 제시, 토론 및 의견을 거친 후 부서별, 공종별, 직책별 행동 지침을 설정 사전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
5.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시 월중 중점관리사항 및 각 업체별 위험성평가서 상의 위험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이상 발견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안전일지 및 점검일지상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6.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사전 제출된 안전작업계획서상의 내용중 이상 발견시엔 해당 공종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 사전에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제6장 근로자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제36조 【근로자 의무사항】 근로자는 법 제6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퇴사조치를 취한다.

1. 안전모, 안전화, 안전그네 및 해당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착용 철저
2. 출입(접근)금지 : 위험장소에의 접근, 출입제한
3. 작업중지 : 급박한 사고발생 위험시 또는 안전지시시에 작업중지
4. 안전보건교육 참석 및 이행
5.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계자의 안전지시 이행
6. 기타 관계법령, 규칙, 취업규칙,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지침의 준수

제37조 【근로자 준수사항】 각 조항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인한 처벌과 아울러 산재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1. 근로자는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위험기계 기구에 부착된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체 또는 제거하면 안된다.
4. 근로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5. 근로자는 위험한 상황이나 이상 발견시 즉시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한다.
6. 근로자는 회사에서 지시한 작업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처리 및 대책수립

제38조 【재해처리 절차】

1. 사고발생시 각 협력업체는 즉시 당사의 사무실에 보고해야 한다.
2. 사고발생 접수 후 피재자의 상태를 확인,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병원으로 이송 조치 하며 본사에 즉시 유선으로 보고한다.
3. 중대재해 발생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별도 보고하며 목격자 또는 피재자의 진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본사에 서면 보고한다.
4. 산재보상처리는 당사의 건설사업본부에서 관할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서류는 신속히 주관부서에 전송하여 준다.
5. 안전관리자는 사고발생원인 및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조치하며, 당 현장의 전 근로자에게 사고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동종재해발생을 막는데 노력한다.
6. 기타 사항은 당사 “재해조사처리지침”에 따른다.

제8장 부칙

제1조 【감독 및 의무】

1. 이 규정에 의하여 당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이하 당사 직원 및 협력사의 직원과 근로자들은 각기 부여된 사항에 관하여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당 규정이 정하는 사항외에 공공기관의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당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는 사업장내 산재 불안전상태에 대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등을 실시해야 한다.
3.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이하 전 근로자는 관계법령과 당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원청사의 안전지시사항에 관하여 충실히 이행 해야하며 사업장내 재해발생 위험시 안전조치 여부에 관하여 시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